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603
----------	-------

발의연월일 : 2026. 3. 19.

발 의 자 : 임오경 · 김원이 · 김 윤
진성준 · 박홍배 · 박수현
이기현 · 조계원 · 황명선
김재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국가기관 등의 공문서등 작성 시 한글 사용 의무와 평가 및 평가결과 공개에 대한 사항과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 대한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문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그 결과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공문서등 작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공문서등에서 여전히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와 외국어 등이 사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은 국어의 올바른 사용과 한국문화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그 자격에 대한 신뢰성과 책임성을 갖출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상 자격 취득과 관련한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성범죄자 등 부적격자가 자격을 취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문서등 작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공문서등의 평가 결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개선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결격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교육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9조, 제19조의3 신설 등).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어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평가 및 공개에 관하여”를 “교육 실시, 평가 및 공개 등에”로 한다.

② 공공기관등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용어의 표준화, 어문규범의 준수와 국어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문서등 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등에 대하여 공문서등의 작성 실태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전문상담,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19조의3을 제19조의4로 하고,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9조제3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19조의4(종전의 제19조의3)제2호 중 “제19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을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로, “대여한”을 “빌려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26조제1호 중 “제19조의3”을 “제19조의4”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9조제3항에 따른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평가)</p> <p>① (생략)</p> <p><u><신설></u></p> <p>② (생략)</p> <p><u><신설></u></p> <p>③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등의 한글 사용, 평가 및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평가)</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공공기관등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용어의 표준화, 어문규범의 준수와 국어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u></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④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문서등 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등에 대하여 공문서등의 작성 실태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전문상담,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u></p> <p>⑤ ----- ----- <u>교육 실시, 평가 및 공개 등에</u> ----- -----.</p>
<p>제19조(국어의 보급 등) ① ~ ③ (생략)</p> <p><u><신설></u></p>	<p>제19조(국어의 보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u></p>

④ (생략)

<신설>

하여서도 아니 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9조의3(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9조제3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

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

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

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

나,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

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

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에 있는 사람

제19조의3(자격취소)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은 제19조제3항에 따

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제19조의4(자격취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19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신설>

제26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9조의3에 따른 자격의 취소
2. (생략)

-----.

1. (현행과 같음)
2.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

빌려준 --
3. 제1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26조(청문) -----

-----.

1. 제19조의4-----
--
2. (현행과 같음)